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http://www.daedeok.go.kr

제2020-6호
2020. 1. 17.(금)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차 례

고 시(1)

-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(고시 제2020-8호)1

공 고(4)

-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매 제안 공고(공고 제2020-41호)2
-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실시 지원계획 공고(공고 제2020-52호)6
- 2020년도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(공고 제2020-57호)11
- 공 시 송 달 공 고(공고 제2020-59호)18

입법예고(1)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입법예고(공고 제2020-53호)19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부여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부여사유 (도로명 고시일)	비고
오정동 345-7, -9	오정로23번길 54-11	2020. 1. 17.	건물신축	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상서동 326-40	새말2길 55	2020. 1. 17.	건물신축	옛 지명(새말) 명칭 반영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(☎042-608-5305)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<http://www.juso.go.kr>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◆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매 제안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에서는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하여 계획구역(붙임 참조) 일원 토지(건축물 등 일체 포함)의 소유자로부터 부지매매 제안 모집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제안 개요

가. 목 적 :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주민제안 확보

나. 제안서 제출 자격 : 계획구역 부지(건축물 등 일체 포함) 소유권자
다. 제출기한 : 2020년 2월 21일

라. 제안규모 : 토지면적 기준 600㎡ ~ 1,000㎡

마. 제안내용 : 소유 토지(건축물 등 포함) 보상 매매 제안

- 1). 본인은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며,
- 2). 매매가격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절차에 따라 향후 산정되는 감정가격에 이의 제기 없이 적극 응할 것이기에 본 제안서를 제출함.
- 3). 공영주차장 조성시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 이전 본인(소유자) 책임하에 거주자 퇴거 및 집기류 이전을 완료하겠음.
- 4). 아울러, 대덕구청의 부지선정 심사결과에 어떤 이의제기도 않겠음.

바. 기 타 : 연접부지 토지소유자와 공동제안 가능함.

사. 제안서 제출방법 : 등기우편(우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대덕구청 교통과) 또는 직접방문 제출

아. 제안서 철회 : 제안서 심사 통보일 전까지 철회 가능

※ 대덕구청 직접 방문하여 철회서 제출 시에만 가능함.

2. 향후 일정 안내

가. 제안서 심사선정 : 제출기한 이후 모든 제안자 초청, 제안의견 청취 후 대덕구 사업예산 범위 내(확보예산 : 보상비 13억원) 최적지 심사 선정

나. 주차장 조성계획 : 부지선정 이후부터 계획

- 1).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시행
- 2.) 주차장 토지보상 공고
- 2). 감정가격(보상가격) 통보 및 협의 매수
- 3).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착수
- 4). 주차장 조성 완료 및 운영

3. 기타 문의사항 안내 :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(☎042-608-5291~4)

- 붙임 1. 주차장 조성 계획구역(위치도) 1부.
2. 제안 신청서 1부. 끝.

(붙임 1) 주차장 계획구역(위치도)



(붙임 2)

부 지 매 매 제 안 서

제 안 자 :

제안부지 : 주소(도로명 주소) / 면적 000m²

제안내용

1. 본인은 비래동 공영주차장 구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매(제공) 하고자 하며,
2. 매매가격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절차에 따라 향후 산정되는 감정 가격에 이의제기 없이 적극 응할 것이기에 본 제안서를 제출함.
3. 공영주차장 조성시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 이전 본인(소유자) 책임하에 거주자 퇴거 및 집기류 이전을 완료하겠음.
4. 아울러, 대덕구청의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심사결과에 어떤 이의제기도 않겠음.

2020년 0월 00일

제안자 : 0 0 0 (인감도장)

첨 부 : 1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

2. 인감증명서 1부, 토지 및 건축물 등기 각1부.

대덕구청장 귀하

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실시 지원계획 공고

우리 구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자투표 서비스 소요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기 간 : 2020. 1. ~ 2020. 12.
2. 지원대상 및 기준 :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/ 단지별 연 2회 지원 (여건 고려 변경가능)
※ 300세대 이상, 150세대 이상(승강기, 중앙집중·지역난방, 주상복합)
3. 지원대상
 -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
 -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, 관리규약의 제·개정
 - 공동·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
 -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
4. 지원방법 : 대덕구청 건축과로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 후 전자투표 실사에 따른 수수료 지원
※ 선관위에서 설치·운영하는 현장투표소 소요비용도 지원

◆ **지원내역(금액) / (K-Voting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)**

- 전자투표 세대당 550원 ~ 770원 (세대수에 따라 금액 변동)
- 현장투표소 지원내역
 - 현장지원 인원 : 2명 (44만원)
 - 현장지원 물품 : 터치스크린 모니터 2대, 노트북 1대, 투표용지발급프린트 등
- 이용아파트 준비사항
 - 준비사항 : 투표소 내 인터넷 환경구성(유선LAN 설치), 관리자용 테이블, 현장지원인력 테이블
 -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대여 : 기표대, 수기투표 병행시 투표 및 기표용구

5. 제출서류

전자투표
실시 전

- 지원신청서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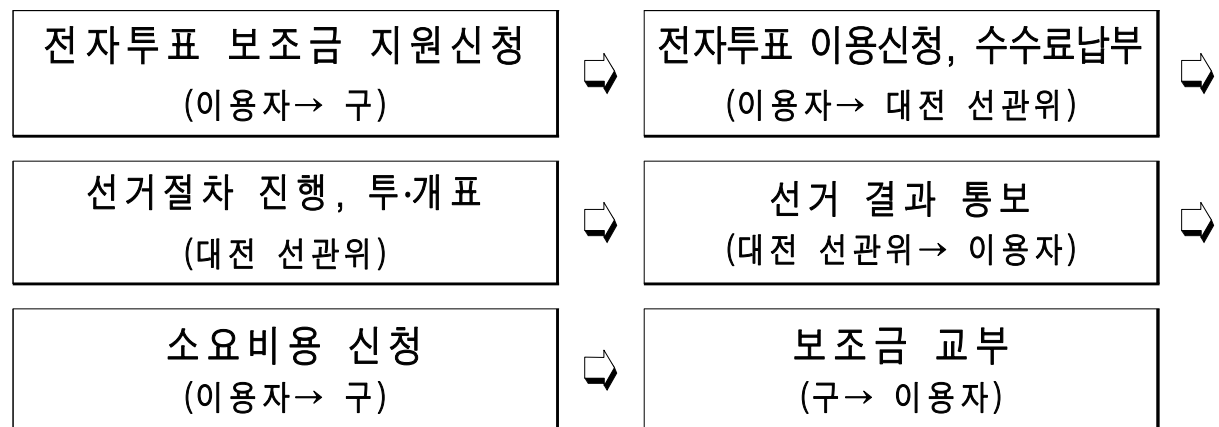
전자투표
실시 후

-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
-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
-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

6. 지원결정의 취소 사항

-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

7. 지원절차 (K-Voting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)



※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

위원회명	전화번호	비 고
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	042-610-3915	서구 한밭대로 713(월평동)
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	042-634-0039	서구 한밭대로 713(월평동)

8. 유의사항

- 접수된 신청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(☎ 608-41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서식 1> 지원신청서

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 (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서비스)				
신청자	공동주택 단지명		동 수	
	주 소		세대수	
	선거명		선거일	
신 청 내 용				
개 요		소요예산		비고
전자투표 수수료				
현장투표소 소요비용				
합 계				
「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
2020년 월 일				
신청인		관리사무소장 (인)		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				
구비서류 1. 입주자대표회의(선거관리위원회)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				

2020년도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

우리 구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접수기간 : 2020. 2. 25. ~ 3. 2.(5일간)

2. 접수장소 : 관할 동 주민센터(취합 후 일괄 구에 제출됨)

3. 신청대상

- 「주택법」 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(☞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)

※ 최근 5년 내 교부금을 기 지원받은 대상사업 신청 시 지원 심의 제외

(단, 안전상 보수시급성을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예산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)

4. 지원대상 사업

○ 단지내 도로의 보도·가로등·하수도 시설물 등 보수

○ 조경시설,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*

*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5조 규정의 행위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

○ 어린이놀이터, 경로당의 보수

○ 자전거 보관대·CCTV 설치 및 보수

○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

○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, 파고라 보수

○ 공동체 활성화 시설 설치·보수

○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(공동시설 한함)

○ 재난·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

5. 지원 금액

- 총 사업비의 80%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천만원 이하 지원

지원	· 의무관리단지 60% 이내
기준	· 의무관리단지 이외 단지중 80세대 이상 단지 70% 이내 · 80세대 미만 단지 80% 이내

6.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※ 대표회의 또는 관리기구(관리소장)가 미구성된 단지는 단지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4/5 이상 동의를 거쳐 제출

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* 사본 1부

*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시 회의록(회의참석자 서명)사본

-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(해당 단지 한정)

- 자부담능력 입증자료(잔액증명서, 통장사본 등)

-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

※ 견적으로 제출 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

- 지방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1부 및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 서류(용역 관리 포함)

- 2019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포상 증빙자료(해당단지에 한함)

- 경비원 및 청소원 휴식공간 마련,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증빙자료(해당단지에 한함)

7. 지원사업의 결정

- 심사기준(사업의 필요성 · 시급성 · 단지규모, 노후도, 기 지원현황 등)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“대덕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”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및 지원액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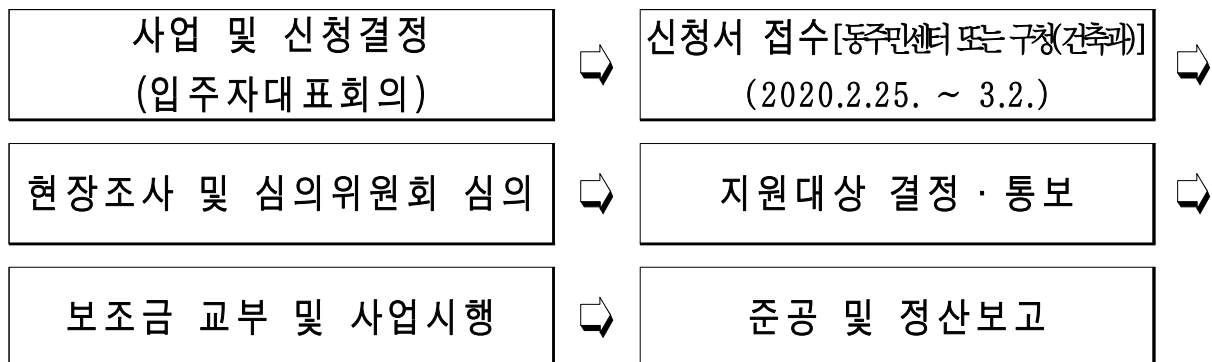
- 특히, 경비원 고용안정 기여(최근 3년간) 현황 심사 시 반영

-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은 동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,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

8. 지원결정의 취소사항

-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
-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-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

9. 지원절차



10. 유의사항

-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업계획서는 현황사진 포함 3매 이내로 1부 제출(추후 구청 요구 시 추가제출)
-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반드시 4월 중 공사 착공
-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
-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
-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

11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(☎ 042-608-4162~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서식1>

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신청서						
신청자	공동주택명				동 수	
	위 치				세 대 수	
	입주자대표회의의결일				준 공 일	
신 청 내 용						
구 분 (분야)	사 업 개 요			총사업비(단위:천원)		
	사업명	착 공 예정일	완 공 예정일	계	지원금 신청액	자 체 부담액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0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○○아파트 관리사무소장 ○○○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 ○○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○○○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연락처 ○○○-○○○○-○○○○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대덕구청장 귀하</p>						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. 장기수선계획서 사본(해당 단지 한정) 3.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4. 청렴이행서약서 및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서류(최근 3년간) 					

<서식2>

사업 계획서

단 지 명 :

사업 개요

○ 공 사 명 :

○ 총사업비 :

○ 산출내역(간략)

-

-

-

○○○○○(대상 공동시설) 전체 현황

○

-

-

○

-

-

사업 내용

○

○

추진 기간 :

그동안 ○○○○(대상 공동시설) 보수 내역

○

○

○

※ 년도 순으로 작성 요망

현황(시설) 사진

※ 전경사진 1매, 시설물 별 1매 이상 사진 첨부

사이즈 4×6(10.2cm×15.2cm) 이상

<서식3>

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,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 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) >

-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
 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 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 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 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 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 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98조)
 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 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2020. . .

□□□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(서명)

책임관리자 직책 관리사무소장 성명 (서명)

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(서명)

공 시 송 달 공 고

우리구 삼정동 일원 이촌마을 진입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 및 회차가 불가능한 지역으로, 금회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생활 편의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「이촌마을 도로확·포장공사」와 관련하여,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으로 토지보상협의를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(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17일

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이촌마을 도로확·포장공사
- 위 치 : 대덕구 삼정동 산9-3번지 일원
- 사업규모 : 도로 확·포장 L=418m, B=10~14m
-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고시일 ~ 2020. 12. 31.
- 시 행 자 :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2. 공고기간 및 장소

- 공고기간 : 2020. 1. 17. ~ 2020. 2. 3.(18일간)
- 공고장소 : 대덕구청(도시계획과)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

3.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

- 협의기간 : 2019. 03. 15. ~ 수용재결 신청 통보 전
- 협의장소 : 대덕구청 도시계획과(별관 4층)
- 보상방법 :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등 절차 이행후 시중 은행계좌에 현금입금
- 보상금산정방법 :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
- 보상협의 시 지참물 및 구비서류
 - 신분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2부(부동산 매도용, 일반용 각 1부), 토지대장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이력포함),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, 예금통장(사본)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입법예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규정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자치법규명 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

2. 제안이유

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과학기술 기관·단체 협력 촉진사항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규정(안 제5조부터 안 제 10조까지)

마. 과학기술 분야 공적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(안 제11조)

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참조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

- 1) 서 면 :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(오정동)
대덕구청 기획홍보실
- 2) 전 화 : 042-608-4072
- 3) F A X : 042-608-3811
- 4) E-mail : kkyyyss@korea.kr

6. 그 밖의 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(전화 : 042-608-407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덕구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과학기술 인재육성, 과학문화 확산 등 시책 추진과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과학기술진흥사업)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및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 주민의 과학기술 소양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2. 초·중·고 학생의 과학적 창의력·사고력 향상 지원 사업
3. 과학기술문화 체험시설 조성 사업
4.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과학기술 축제·행사
5.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 기관·단체 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
6. 은퇴과학자 활용 및 과학기술 단체 육성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기관, 대학, 비영리법인·단체 등(이하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의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5조(과학기술진흥위원회) 구청장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1.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
2. 주민의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 대중화에 관한 사항
3.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과학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**되며**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2.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
3.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**자**

4. 과학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

5. 그 외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「대

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의안명 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

2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

- 과학인재양성 교육, 과학문화 확산 등 과학기술진흥 사업

나. 관련조문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제3조(과학기술진흥사업)

3. 비용추계 전제 : 계속사업(매년시행)

4. 비용추계 결과(내역)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총비용(a-b)							
세입	소계(a)	73,000	85,000	85,000	95,000	95,000	433,000
	국비보조금	-	-	-	-	-	-
	시비보조금	-	-	-	-	-	-
	지방세	-	-	-	-	-	-
	세외수입	-	-	-	-	-	-
	기타(구비)	73,000	85,000	85,000	95,000	95,000	433,000
세출	소계(b)	73,000	85,000	85,000	95,000	95,000	433,000
	과학기술진흥사업	73,000	85,000	85,000	95,000	95,000	433,000

※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변동가능

5. 비용추계(세출) 산출내역

- 세입 : 지방세(자체수입)
- 세출 : 과학체험교육 10백만원, 과학캠프 10백만원, 드론체험전 50백만원,
대덕힐링투어 3백만원 / 1차년도(2020년) 기준

6. 재원조달 방안

가. 재원조달 계획

(단위:천원)

	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
의존 재원	소계	-	-	-	-	-
	국비보조금	-	-	-	-	-
	시비보조금	-	-	-	-	-
	자체수입 (지방세,세외수입 등)	73,000	85,000	85,000	95,000	95,000
	합계	73,000	85,000	85,000	95,000	95,000

나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: 지방세 자체수입 / 구비 100%

7. 부대의견 : 없음

8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9. 작 성 자 : 기획홍보실 행정 6급 김유식

관 계 법 령

□ 과학기술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)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8. 27.>

④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19. 8. 27.>

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·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,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9. 8. 27.>

[전문개정 2010. 2. 4.]

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○ 의 견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고
	찬성	반대		